



한번에 끝내는
알기쉬운
DDA 협상용어
50선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글로벌 Top 10"

	1
1. DDA 협상	1
2. 주요4개국 (G4, Group of Four)	1
3. G10	1
4. G33	2
5. G20	2
6. 소규모취약국가(SVE, 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2
7. 신규가입국(RAM, Recently Acceded Members)	2
8.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3
9. 비농산물협상(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3
10. 세부원칙(Modalities), 이행계획서(Schedule)	3
11. 합의가 가능한 예상 범위(Landing Zone)	4
12. 다자(차원의)프로세스(Multilateral Process)	4
13.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5
14. DDA 농업협상 3대 분야 (3 Pillars: 3가지 기둥)	5

15. 이행기간 (Implementation Period)	5
16. 개도국 우대(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6
	6
17. 구간경계(Threshold)	6
18. (관세)감축률 (Reduction Rate)	7
19. 최상위구간(Top Band)	7
20. 세번(Tariff Line)	7
21. 관세상한(Tariff Capping)	7
22.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8
23. 무(관)세	8
24. 이탈(Deviation)	8
25. 수입쿼타(TRQ, Tariff Rate Quota)	9
26.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9
27. 특별품목 지표(Indicators)	10
28.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10
29.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10
30.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11
31.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종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	11
32. 수입쿼타 관리(TRQ Administration)	12
33. 열대작물(Tropical Products)	12
34. 특혜(관세)잠식(Preference Erosion)	12

.....	13
35. 국내보조의 종류 (Domestic Support Category)	13
36. AMS (감축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14
37. 품목특정 AMS 상한(Product-specific AMS Cap)	14
38. 블루박스(Blue Box)	15
39. 신규사용국(Newcomer)	15
40. 블루박스 상한(Capping or Ceiling)	16
41. 최소허용보조(De-minimis)	16
42. 허용보조(Green Box)	16
.....	17
43. 수출보조 (Export Subsidy)	17
44. 수출신용 (Export Credit)	17
45. 식량원조 (Food Aid)	17
46. 수출국영무역기업(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18
.....	18
47. 평화조항 (Peace Clause)	18
48. DDA 협상과 FTA 협상	18
49. WTO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19
50.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
.....	21



1. DDA 협상

- 중동 지역에 있는 '카타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도하(Doha)'인데 2001년 11월 전세계 장관들이 '도하'에 모여서 무역자유화협상을 하기로 하고 그 이름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하개발의제'인데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주요4개국 (G4, Group of Four)

- DDA 협상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미국, EU, 인도, 브라질을 '주요 4개국'이라고 합니다. 주요4개국이 종종 모여서 협상 일정, 주요쟁점에 대해 협의하고 사전조율을 하기도 하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DDA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3. G10

-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순수입국 모임인데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입니다.

4. G33

-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인데,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G20

- G20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 G10, G33, G20 등은 당초 각각 10개국, 33개국, 20개국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모임에 참가하는 나라의 수와 상관없이 고유명사처럼 쓰입니다.

6. 소규모취약국가(SVE, 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 소규모취약국가는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덜 깎게 봐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봐줄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7. 신규가입국(RAM, Recently Acceded Members)

- WTO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도하 개발아젠다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나라들로 2007년 7월 현재 50개국인 최빈개도국입니다. DDA 협상에서 최빈개도국들에게 우대를 주기로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최빈개도국들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량을 제한하지 말고 관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9. 비농산물협상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 뿐 만 아니라 농업이 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합니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 협상'이라고 합니다.

10. 세부원칙(Modalities), 이행계획서(Schedule)

-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 기간 등 구체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의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합니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됩니다.

11. 합의가 가능한 예상 범위(Landing Zone)

- 협상을 오래하다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가정할 때) 협상 타결 예상 수치가 감이 잡힙니다. 물론 그 감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수치를 비행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비유해서 landing zon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2. 다자(차원의)프로세스(Multilateral Process)

- 2007년 7월 현재 WTO 회원국은 151개국인데 실제 DDA 협상에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몇 몇 회원국끼리 비공식적인 협상과 의견조율을 많이 추진합니다. 공식적인 협상과 비공식적인 막후 협상이 균형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 질 때 협상에 진전이 생기곤 합니다. 다자프로세스는 비공식적인 막후 협상 보다는 WTO 회원국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교적 공개적인 협상을 말합니다.

13.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게 부여한 무역협상권한을 말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무역협상권한은 원래 의회에 있습니다. 무역촉진권한을 행정부에게 주었기 때문에 미 의회는 협상 결과를 몇대로 고칠 수 없고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은 2007년 6월말로 종료되었으며, 무역촉진권한이 갱신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당 시에는 신속협상권(FTA, Fast Track Authority)라고 불리었습니다.

14. DDA 농업협상 3대 분야(3 Pillars: 3가지 기둥)

- 농산물 관세 감축 분야를 시장접근(market access), 농업보조금 감축과 제한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과 식량원조 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제한을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이라고 합니다.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이 농업협상의 3대 분야입니다.

15. 이행기간 (Implementation Period)

-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할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감축합니다. 그 시간을 통상 이행기간이라고 합니다.

16. 개도국 우대(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DDA 협상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작고 이행기간도 깁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선진국이 2/3 수준이었고 이행기간도 개도국은 10년 선진국은 6년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개도국별로 실제 감축폭과 이행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17. 구간경계(Threshold)

-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를 더 많이 깎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100%p인 관세는 관세감축률이 70%이고 50%p인 관세는 60%를 감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00%p인 관세는 관세감축후 30%p가 되고 50%p인 관세는 20%p가 됩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에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려면 구간 (band, tier)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관세수치를 구간경계 (threshold)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결과 구간 (band) 수는 4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 (관세)감축률 (Reduction Rate)

- 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p에 관세감축률이 50%를 적용하면 감축 후 관세는 100%p가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관세감축률이 100%이면 모든 관세는 감축 후에는 0%p가 됩니다.

19. 최상위구간(Top Band)

- 가장 높은 관세감축률을 적용받는 고관세 구간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75%p를 넘는 관세는 최상위구간에 속할 것으로 보이고 70%정도 관세감축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 세번(Tariff Line)

-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의 세번이 있습니다.

21. 관세상한(Tariff Capping)

- 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으로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는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타(TRQ)를 주어야 합니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23. 무(관)세

- 관세가 없는 즉 관세가 0%p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관세가 있는 세번은 '관세부과가 가능한 세번' (dutiable tariff line)이라고 합니다.

24. 이탈(Deviation)

- 민감품목은 여타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덜 감축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를 '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100%p 관세가 있고 일반 관세감축률이 50%라고 하면 감축후에는 50%p가 됩니다. 그런데 이탈을 50% 허용한다고 하면 일반관세감축률 50%의 50% 이탈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25%만 감축하게 됩니다. 이 경우 100%p 관세는 75%p가 됩니다. 현재 민감품목에게 이탈을 많이 허용하려는 수

입국들과 이탈을 가급적 제한하려는 수출국들 간 입장차가 큼니다.

25. 수입쿼타(TRQ, Tariff Rate Quota)

-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물량을 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p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p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5%p의 관세를 쿼타내관세(in-quota tariff)라 하고 120%p의 관세를 쿼타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합니다.

26.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 개도국들은 식량안보(food security), 생계유지(livelihood security), 농촌개발의 필요(rural development needs)를 감안하여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개도국간 입장차가 매우 큼니다.

27. 특별품목 지표(Indicators)

- 특별품목을 지정하는 기준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알려면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해당 농산물에 종사하는 농가인구,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칼로리 비중)등이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품목 지표에 대해 G33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습니다.

28.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특별긴급관세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합니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29.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구체내용은 현재 협상

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31.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종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

- 관세단순화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종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종가상당치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 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높고 낮은 구간대로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종가상당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452개 농산물 세 번(tariff line)중에서 76개 세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종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종가세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mixed duty)입니다.

32. 수입쿼타 관리(TRQ Administration)

- 각국별로 수입쿼타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입쿼타를 운영하는 것을 수입쿼타 관리 즉 TRQ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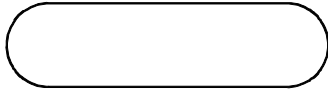
33. 열대작물(Tropical Products)

-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34. 특혜(관세)잠식(Preference Erosion)

- 특혜잠식문제는 주로 모리셔스 등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들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을 낮은 특혜관세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면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 즉 특혜마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35. 국내보조의 종류(Domestic Support Category)

(표.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국내 농업보조금의 기본구조)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허용보조 (Green Box)
감축보조 (AMS)	감축면제보조 (De-minimis)	과도기적 보조 (Blue Box)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크게 보아 감축 의무가 없는 허용보조 즉, Green Box와 감축을 해야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AMS, De-minimis, Blue Box의 개념이 탄생하였습니다.
- DDA 협상에서는 AMS, De-minimis, Blue Box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AMS, De-minimis, Blue Box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OTDS도 감축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 수(OTDS)를 줄이고 각 방 (AMS, De-minimis, Blue Box)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 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36. AMS (감축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했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감축하기로 하였는데 구체감축폭은 협상중입니다.

37. 품목특정 AMS 상한(Product-specific AMS Cap)

- DDA 협상에서는 AMS 총액 뿐 만 아니라 품목별로 줄 수 있는 AMS 한도(상한)도 논의 하고 있습니다.

38. 블루박스(Blue Box)

-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AMS와 같은 보조금입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블루박스(old blue box)입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DDA 협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인정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기존 블루박스와는 달리 생산제한을 하지 않고도 줄 수 있는 직접지불입니다. 이를 새로운 블루박스(new blue box)라고 합니다. 물론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경지면적을 고정하는 등 제약이 따릅니다.

39. 신규사용국(Newcomer)

- 한국, 대만 등은 과거에 블루박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나라들에게는 블루박스 사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신규사용국(newcomer)이라고 합니다.

40. 블루박스 상한(Capping or Ceiling)

- 블루박스에는 총액에도 상한이 있고 품목별로도 상한이 있을 전망입니다. 총액 상한은 국별 농업총생산액의 2.5%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품목별 상한도 협상중에 있습니다.

41.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De-minimis는 라틴어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소허용보조는 AMS와 성격이 같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감축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이고 감축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해야 합니다.

42. 허용보조(Green Box)

-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 보조금은 감축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허용보조라고 합니다.



43. 수출보조 (Export Subsidy)

-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4. 수출신용 (Export Credit)

-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이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농산물 수출에 조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등을 적용했는데 DDA 협상에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장금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중입니다.

45. 식량원조 (Food Aid)

-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재고식량을 덤핑으로 해외시장에 팔는 경우가 많습니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덤핑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방향입니다.

46. 수출국영무역기업(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거대한 수출국영 무역기업이 있어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DDA 협상에서는 이들 기업의 독점력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7. 평화조항 (Peace Clause)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WTO 농업협정 제13조를 말합니다. 평화조항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DDA 협상에서 논의됩니다.

48. DDA 협상과 FTA 협상

- 통상법적으로 양자간 FTA와 다자간 DDA 협상은 별개입니다. 국제통상의 기본규범인 GATT 즉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24조)에 따르면 '다른나라와의 기존 이익(무역)을 해치지 않으면' FTA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비유를 하자면, 한 동네에서 두 집만 서로

친하게 지내면 다른 집들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즘 전세계적으로 FTA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FTA 때문에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약화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49. WTO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통상 2년에 한 번 열립니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50.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1995년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탄생했습니다. 회원국은 151개국이고 사무국 직원은 약 600명 정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레만 호수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1]

UR·DDA

구 분	UR 협상	DDA 협상
협상출범	1986.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	2001.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 과 정	1988.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 결렬) 1990.6월 (1차 초안제시) 1990.12월 (브라셀 각료회의 결렬) ※브라셀 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 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12월 (던켈 총장 초안제시)	2002.3월 (하빈슨의장 초안 제시) 2003.9월 (칸쿰 각료회의 결렬) 2004.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12월 (홍콩 각료회의 : 시한연장) ※홍콩 각료회의 시한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 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2006.7월 (라미 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미·EU 합의 (블레이하우스 합의)	1992.11월	-
미 행정부 TPA 연장	1993.1월	- (2007.7.1. 미 TPA 만료)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3월	-
협상종결	1994.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

주) 블레이하우스 합의란 미국과 EU가 백악관 블레이하우스에 모여 농업 국내보조 합의를 도출한 것(블루박스 보조 등 합의)으로 UR 타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DDA

■ '01년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 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출범**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 ('03.3) ② 이행계획서 제출 ('03.9, Cancun 각료회의) ③ 협상완료('04말)

■ '03.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04.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04.8.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05.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 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 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 유지

■ '06.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

■ '06.11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07.1.27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키로 합의

-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다자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진전을 위해 두 차례 **의장 문서를 제시('07.4월, 5월)**
- ▣ '07.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 ▣ '07.7월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 **세부원칙 초안 배포**
 - 향후 이를 논의의 중심으로 활용, **9월중 집중적인 다자협의를** 거쳐 연내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할 **전망**

[붙임 3]

DDA

구분	대상 국가	기본입장	비 고
G6	미국, EU, 브라질, 인도(이상 G4국가), 일본, 호주		농업협상 주요국 그룹
G10	한국 ,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 관세상한 설정 반대 · 관세감축 신축성 주장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	수출국 그룹

구분	대상 국가	기본입장	비 고
G20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우루과이, 짐바브웨	- 개도국 입장 대변 ·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 수출보조 철폐 · 개도국 우대 강화	강경 개도국 그룹
G33	한국 ,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 개도국 입장 반영 · 특별품목(SP) 및 특별긴급수입제한 제도(SSM)에 중점	특별품목 그룹
G90	African, Carribean and Pacific Group(ACP),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Africa Union(AU) 국가들로 구성(모리셔스, 남아공, 이집트 등)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	
ACP 그룹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79개 국가	-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	

[붙임 4]

	대상 국가	'06.6월 모델러티 초안	'07.4·5월 의장문서	'07.7월 모델러티 초안
무역왜곡 보조총액	EU	70~80%	70~80%	[75] [85]%
	미국 일본	53~75%	53~75%	[66] [73]%
	그외 국가	31~70%	31~70%	[50] [60]%
AMS	EU	70~83%	70%	[70]%
	미국 일본	60~70%	60%	[60]%
	그외 국가	37~60%	37~60%	[45]%
Blue Box		농업생산액 5%에서 2.5%로 감축, 품목별 상한설정	상한은 2.5%로 감축	상한은 2.5%로 감축, 품목집중 지원방지
de-minimis		50~80% 감축, 이행철폐 적용 또는 단계적 감축	최소 50% 감축	최소 50% 또는 60% 감축, 이행철폐 적용 또는 단계적 감축
Green Box		현행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요건 변경여부와 개도국 우대조항 신설내용은 향후 협상과제	일반서비스, 공공비축, 직접지불, 재해지원 등 일부내용 수정 필요성 제기	일반서비스, 공공비축, 직접지불, 재해지원 등 일부내용 수정, 개도국 우대조치 반영

* OTDS 구간경계 : 600억불이상, 100~600억불, 100억불 이하

* AMS 구간경계 : 250억불이상, 120~250억불, 120억불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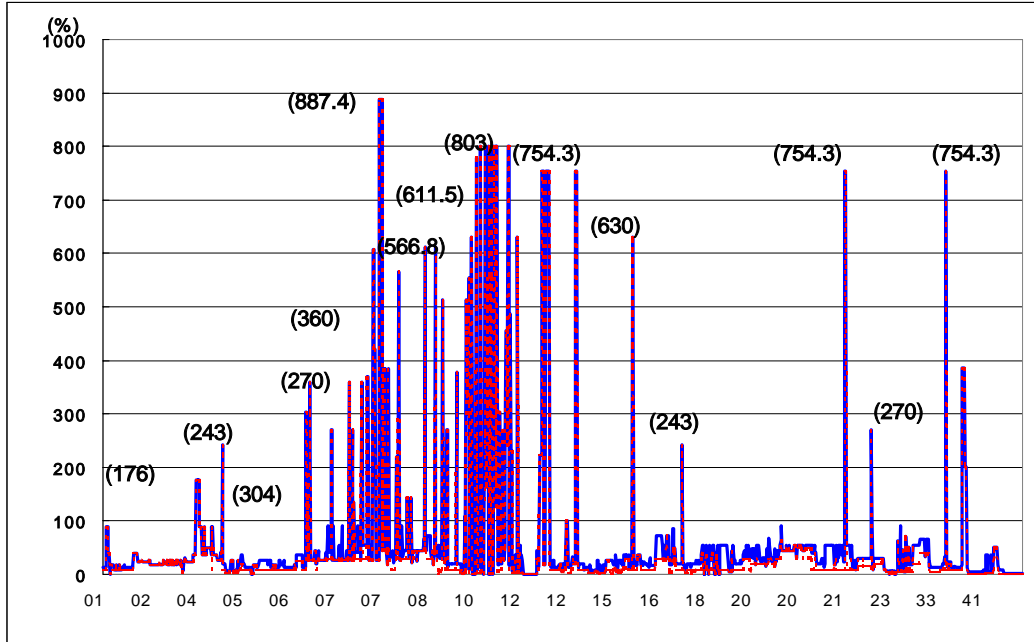
[붙임 5]

(단위 : 억원)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농업총생산액	267,361	290,520	302,706	307,483	330,619	330,007	336,327	334,445	330,163	372,886
보조금 총액 (수출보조제외)	63,695 63,683	75,273 75,249	84,293 84,263	77,564 77,528	75,715 75,566	73,391 73,200	79,727 79,468	84,599 84,333	79,774 79,527	69,485 69,229
감 축 보 조	23,577	23,111	25,923	23,464	20,384	22,153	22,121	23,404	21,653	20,019
AMS	20,755	19,674	19,370	15,628	15,519	16,909	16,314	15,504	15,217	14,584
de-minimis 품목특정	334	533	2,620	2,581	817	1,117	1,836	2,870	2,292	1,063
de-minimis 품목불특정	2,488	2,904	3,933	5,255	4,048	4,127	3,971	5,030	4,144	4,372
허 용 보 조	40,106	52,138	58,340	54,064	55,182	51,047	57,347	60,929	57,874	49,210
수 출 보 조	12	24	30	36	149	191	259	266	247	256

- 1) 정부서비스 : 일반서비스+식량안보+식량구호
- 2) 생산자에대한직접지불 : 생산중립소득지원+자연재해구호
+구조조정투자지원+환경보전지원+기타직접지불
- 3) 보조금총액 : 허용+감축+수출보조,
- 4) 농업총생산액 : 농림부 농업통계연보

[붙임 6]



500%	46	,	,	,	,
200~499	78	,	,	,	,
100~199	18	,	,	,	,
50~99	189	,	,	,	,
40~49	132	,	,	,	,
30~39	147	,	,	,	,
20~29	249	,	,	,	,
10~19	381	,	,	,	,
0.1~9.9	183	,	,	,	,
0	29	,	가		
	16				
	1,452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 02-500-1732~6)